

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고,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

전문공보관 이준호

전화 02-530-4780 / 팩스 02-536-5410

보도자료

2024. 11. 8.(금)

제목

12년 동안 사망자로 살아온 '서울대 노숙 절도범'의 신원을 회복하여 주고 구속취소 및 사회복귀 지원

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

- ☑ 피고인, 죄명, 공소사실 요지, 공소제기 일시, 공소제기 방식, 수사경위, 수사상황, 범행경과 및 수사의 의의 등(제11조 제1항)
- ☑ 제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미리 공개가 필요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소속 검찰청의 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제11조 제2항 제2호) 제7조 제2호 내지 제6호의 공개금지정보

■ **금일(11. 8.)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외벽을 타고 서울대 건물에 침입하여 9회에 걸쳐 절도 범행을 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의 **신원을 회복하여 주고 구속취소 및 (취업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하였습니다.

※ '24. 11. 1.자 언론보도 “8년간 서울대 외벽 타고 200만 원 훔친 60대 노숙인 구속 송치” 등

■ 검찰 수사 결과, 피의자는 사업실패 이후 교통사고로 크게 다치는 바람에 일용직 노동조차 할 수 없게 되자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관악산에서 수년간 노숙생활을 하기에 이르렀고, 이 과정에서 법원의 **실종선고에 따라 약 12년 간 사망자로 간주**되어 오다가 **굶주림을 이기지 못하고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 검찰을 통해 피의자의 사연을 접한 서울대학교 교수, 임직원인 **피해자들은** 피의자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혀 왔습니다.

■ 검찰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피의자가 다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히 실종선고를 취소**하였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과 연계하여 취업지원 등 갱생보호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한편 피의자의 **재범 방지 의지를 확인**하여 피의자에 대한 **구속을 취소**하고 **취업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 앞으로도 검찰은 사안의 구체적 사정을 세심히 살피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따뜻한 검찰**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피의자 및 피의사실 요지

① 피의자

- A (남, 67세, 前 자전거 대리점 운영)

② 피의사실 요지

- '16. 4. 21.경부터 '24. 10. 6.경까지 서울대학교 일대에서 총 9회에 걸쳐서 합계 약 2,194,000원 상당의 현금 및 상품권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침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및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2

수사 및 실종선고 취소 경과

- '24. 10. 23. 관악경찰서, 구속송치
- '24. 10. 24. 피의자 가족 전화면담, 실종선고 취소 동의를사 확인
※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가 약 12년 동안 사망간주된 상태였음을 확인
- '24. 10. 25. 피의자 조사
※ 피의자도 조사 과정에서 “실종선고를 취소하고 사회로 복귀하고 싶다.”며 검사에게 실종선고 취소 청구 요청
- '24. 10. 30. 실종선고 심판서 확보
- '24. 10. 31. 실종선고 취소 청구
- '24. 11. 5. 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 실종선고 취소 인용결정
- '24. 11. 7.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과 취업지원 등 갱생보호 제공하기로 협의
- '24. 11. 8. 구속취소 및 취업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 구속 피의자가 약 12년 동안 실종에 따른 사망간주 상태였음을 발견하고 그 경위를 확인한바, 피의자가 사업실패 이후 교통사고로 크게 다치는 바람에 일용직 노동조차 할 수 없게 되자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가족들과 연락을 끊고 관악산에서 노숙하던 중 굶주림을 이기지 못하고 본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확인함
 - 피의자는 위 실종선고로 인해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지원 등을 전혀 받지 못하고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었음
- 피의자의 사연을 접한 서울대학교 교수 등인 피해자 10명 모두 피의자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고, 피의자도 갱생보호 프로그램 이수에 동의하였음
- 검찰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피의자가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히 법원에 실종선고 취소를 청구하여 인용결정을 받았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과 협의하여 주거지원·취업지원 등 갱생보호 프로그램을 제공하였으며, 피의자에 대한 구속을 취소하고 취업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음
- 피의자는 검사실에 “과거를 반성하고 새로운 터전에서 열심히 한 번 살아보겠다. 보답하는 길은 다시는 과오를 저지르지 않는 것이라 생각하고 바르게 살도록 노력하겠다.”라는 내용의 편지를 전달하며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였음
 - ※ 편지 별첨
- 앞으로도 검찰은 피의자가 범행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경위 등 사안의 구체적 사정을 세심히 살피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적절한 처분을 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는 한편 사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따뜻한 검찰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 ☑

[별첨]

피의자의 감사편지

No.

존경하는

[Redacted] 수사관님 [Redacted]

검사님과
실무관님.

이 고아들은 무슨 말로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기다란 잘못은 저지른 한 인간이
바른길로 갈수 있도록 보여주는 그 막대한
손길이 얼마나 소중한고 가치 있는것인지는
저의 약오로의 삶에 크고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

그 은혜에 보답하는 길은 다산은 과오를 저지르
지 않는것이라 생각하고 바르게 살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런에 절실히 느끼점은 나쁜일을 하면 반사
감히게 된다는것과, 세상에는 따듯하고 양자를
보듬어 주는 그러한 분들이 계시다는것을 발견
한것입니다. 바로 검사님과 수사관님들
입니다. 그분들의 헌신과 애씀을 어떻게 되면
하고 다시 감히 나쁜것을 하겠습니까.

과거를 반성하고 아련해주시고 새로운
.진전에서 열심히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피의자의 감사편지

No.

저에게 새 삶을 아낌없이 주시고
저의 재판을 위해 힘을 써 주신
검사님 이하 수사관님들께 자부심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애써준 수감이 바르게 살고있다는
그런 자부심입니다.

검사님, 그리고 수사관님, 실무관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존경합니다.